

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지원계획

I 추진 목적

-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「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지원계획」을 수립하여 ‘청산절차 운영비’ 및 ‘임금체불 등 채무변제’ 비용을 사학진흥기금으로 (용자)지원하고자 함

※ 추진 근거 :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(사업), 제19조(기금의 사용)

제6조(사업)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3의2. 「사립학교법」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업

제19조(기금의 사용)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사용한다.

II 사업 추진 계획

1 지원 규모 및 방법

- (지원 규모) '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예산 : 11,442백만원*
 - * (예산 내역) ① 청산 절차 운영비 : 1,200백만원
 - ②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: 10,242백만원
- (지원 방법) 상시 신청 및 심사 후 지원

2 지원 대상 및 내역

- (지원 대상)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(자진해산) 또는 제47조(해산 명령)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

○ (지원 내역) ㉔청산 절차 운영비 및 ㉔임금채불 등 채무변제

| 구 분 | 세부 지원 내역(지원 우선순위) |
|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청산 절차 운영비 | ① 감정평가 수수료 ② 관계자 소송비용 ③ 매각공고 광고비 ④ 채권·채무 확인 수수료 ⑤ 용도변경 수수료 ⑥ 청산지원 컨설팅 ⑦ 기타 청산용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청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|
| 나. 임금채불 등 채무변제 | ① 최근 3개월 임금 ② 임금채권 ③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④ 조세·공과금 ⑤ 청산인 보수 ⑥ 기타 청산용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 |

3 용자 신청 및 지원 한도

- (용자 신청) 지원 내역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신청 가능
- (지원 한도)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

※ 지원 한도 산정식 = MIN(①용자 신청금액, ②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)
 : ① 용자 신청금액
 : ② 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(=처분재산 감정평가액 평균의 60% - 선순위채권액)

※ 선순위채권액 -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용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, 향후 용자 지원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

4 용자 조건

- (이자율) 고정금리(재원 조달금리*적용), 연체이자율 연 12%
 * '22년 1/4분기 공자기금 예탁금리 - 연 2.32%
- (상환기간)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(거치기간** 10년 이내)
 ※ 1)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(수수료 無) 가능,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
 2) '거치기간'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,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
- (신용 및 담보 여부) 담보 조건에 한함

5 용자 심사기준

- (심사원칙) 내·외부 업무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용자심사위원회*에서 용자 신청서류의 검토 및 심사

* 총 10인 이내 구성

- 재단 2인, 정부 2인, 법률·회계·금융·부동산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

- (심사기준) 2개 지표, 4개 항목 총 100점 만점

- 심사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, 용자지원

- 심사 항목 및 배점

| 심사지표(배점) | 심사 항목 및 항목별 배점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용자 신청 적정성 (3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속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용자 신청의 적정성 평가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용자 신청내용(20점) - 평가기준 : 청산법인에서 신청한 용자 내역 평가 | | | | |
| | 구분 | 청산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| 청산절차 운영비 |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| |
| | 배점 | 20점 | 15점 | 15점 | |
| 용자 상환능력 (7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*과 용자 신청액 및 용자원리금**(10년 거치 일시 상환금액)의 비교를 통한 용자 상환능력 평가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용자 신청액 대비 청산 처분재산 평가(30점, △) - 평가기준 :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÷ 용자 신청액 | | | | |
| | 구분 | 130% 이상 | 100% 이상 | 70% 이상 | 70% 미만 |
| | 배점 | 30점 | 25점 | 20점 | 15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대비 용자원리금 평가(40점, ▼) - 평가기준 : 용자원리금 ÷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| | | | | |
| 구분 | 70% 미만 | 100% 미만 | 130% 미만 | 130% 이상 | |
| 배점 | 40점 | 35점 | 30점 | 25점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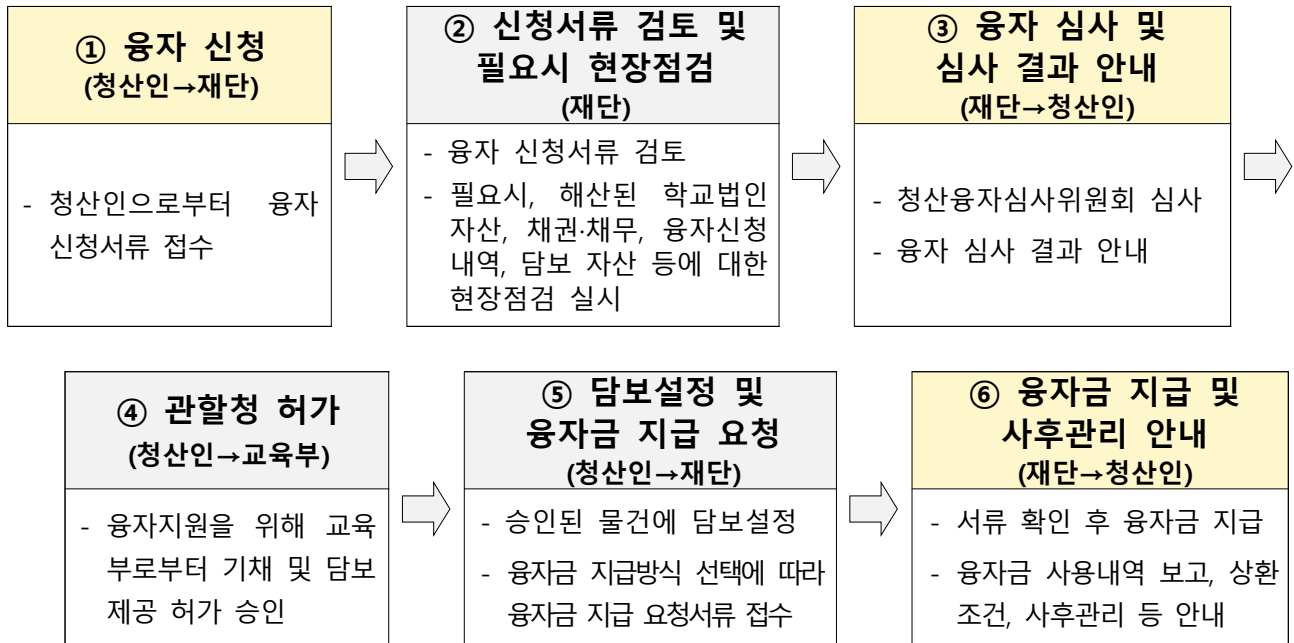
*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= 2개 감정평가 평균금액의 60% - 선순위채권액
단,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100%를 인정하고 인정된 금액의 60%를 반영함

** 용자원리금(10년 거치 일시 상환금액) = 용자금 + (용자금×이자율×10년)

- (배제·제한사항) 심사점수 기준 외 청산용자심사위원회에서 용자 지원 배제 및 제한 사항을 둘 수 있음

6 용자 지원 절차

○ (지원 절차) 신청·접수 → 심사(허가·담보설정) → 지급



- (용자금 지급방식) 직접 및 간접 지급방식 중 선택 가능
 - (직접 지급) 재단에서 용자금을 청산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집행
 - (간접 지급) 재단에서 용자금을 해산된 학교법인 계좌로 지급하고 청산인이 지급 대상자에게 집행

7 용자 사후관리 계획

- (서면조사) 해산된 학교법인은 용자금 집행내역을 반기별 재단에 제출하고, 재단은 용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, 채무변제 완료 여부 등을 조사함
- (현장점검) 재단은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, 용자 관련 제출서류 원본과의 일치 여부, 청산 진행현황 및 완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함

※ 재단은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청산 진행현황 파악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
- (회수조치) 해산된 학교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지원받았거나,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자금 전액 회수조치

III 기타 사항

- (담보물건 평가 방법)

유효담보가액 = 담보인정가액 - 선순위채권액(채권신고를 통해 확정된 금액)

- (유효담보가액) 유효담보가액이 담보설정액(용자금의 130%)을 초과하는 경우, 담보 설정 가능

- (담보인정가액) 감정평가 두 곳 평균 금액*의 60% 반영

*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100% 반영 가능함

- (감정평가 인정 기준) 용자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작성된 감정평가서 인정*

* 2년 이내의 감정평가서가 부재한 경우, 가장 최근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통해 청산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'재감정평가 비용'을 조건부로 '우선 용자 지원'하고, 향후 재감정평가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용자 가능액을 확정하여 잔여 용자액을 지급함

- (채무변제 용자지원 요건) 용자지원을 위해 최신 자산 감정평가를 우선 필요로 하는 해산된 학교법인의 경우,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청산절차 운영비를 먼저 용자 지원한 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함

